

[] 박물관
[] 미술관 폐관신고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14일
등록현황	등록번호		
	등록연월일		
신고인	박물관·미술관 명칭		
	소재지	연락처	
	설립자·대표자 명칭	연락처	
폐관사유			

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문화체육관광부장관 ·
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귀하
도지사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

첨부 서류	1. 등록증	수수료 없음
	2.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	

작성요령

- 1.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: 기존 박물관·미술관 등록증의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을 적습니다.
- 2. 소재지: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소재지와 연락처를 적습니다.
- 3. 설립자 및 대표자: 설립자 및 대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인 경우 법인·단체의 명칭)과 연락처를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